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제 9 조(자동이체 변경, 해지) ①~③항 (내용생략) ④ “은행” 또는 “이용기관”은 최종인출요청일로부터 1년간 출금 요청이 없는 자동이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이용기관”은 “은행”에 자동이체의 해지를 요청하고, “은행”은 해당 건을 해지한다. 2. “은행”은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다.</p> <p>제 10 조 ~ 제 12 조 (내용생략) 제 3 장 ~ 제 7 장 (내용 생략)</p>	<p>제 9 조(자동이체 변경, 해지) ①~③항 (내용생략) ④ “은행” 또는 “이용기관”은 최종인출요청일로부터 1년간 출금 요청이 없는 자동이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이용기관”은 “은행”에 자동이체의 해지를 요청하고, “은행”은 해당 건을 해지합니다. 2. “은행”은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u>단, 금융결제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신청등록 내역은 해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u></p> <p>제 10 조 ~ 제 12 조 (좌 등) 제 3 장 ~ 제 7 장 (좌 등)</p>	<p>해지대상 제외 문구 추가</p>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u>제 8 장 예금의 신규 및 해지</u></p> <p><u>제 31 조 (업무의 처리)</u></p> <p>①“이용기관”이 “출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예금의 신규개설을 의뢰할 때에는 “은행”의 영업시간 내에 신규개설 의뢰명세를 상호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은행”에게 전송합니다.</p> <p>② 제 1 항에 의하여 수신한 신규개설 의뢰명세가 쌍방이 따로 정한 데이터의 송. 수신 절차에 부합되지 수신되었을 경우 “은행”은 이를 “이용기관”의 정당하고 유효한 예금의 신규개설 의뢰로 간주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예금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그 처리결과를 즉시 “이용기관”에게 전송합니다.</p> <p>③“은행”은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장, 중서, 예금청구서 등의 제시에 의한 별도의 예금청구 절차 없이 신규개설 의뢰 금액을 “출금계좌”로부터 인출하기로 합니다.</p> <p>④“은행”은 제 2 항에 의해 신규 개설된 예금을 만기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장, 중서, 해지신청서 등의 제시에 의한 별도의 예금해지 신청절차 없이 해지하여 원금과 이자를 “이용기관”의 출금계좌에 입금하고 처리결과를 즉시 “이용기관”에게 전송합니다</p> <p>⑤ 제 1 항의 예금 신규개설 의뢰시간은 “은행”의 영업시간내로 합니다.</p> <p><u>제 32 조 (변경, 수정, 취소)</u></p> <p>“이용기관”은 “은행”이 제 31 조의 절차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한 이후에는 신규개설 의뢰명세를 변경,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p>	<p>구 외환은행 서비스 추가 적용에 따른 조항 신설</p>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u>제 9 장 관세 납부</u></p> <p>제 33 조 (업무의 범위) <u>“관세납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u> 1. <u>“이용기관”이 납부해야 할 관세의 미납명세 조회</u> 2. <u>“이용기관”이 납부 요청하는 관세의 납부</u> 3. <u>“이용기관”이 납부한 관세의 납부명세 조회</u></p> <p>제 34 조 (업무의 처리) ① <u>“이용기관”과 “은행”은 사전에 지정된 통신망을 이용하기로 합니다.</u> ② <u>“이용기관”이 관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38조에 의하여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기관”의 전산입력장치를 조작하여 입력하기로 하며, “은행”은 이 입력내용을 “이용기관”의 정당하고 유효한 관세납부 의뢰로 간주하여, “이용기관”의 지급계좌에서 인출 가능한 범위내의 관세납부자금을 인출하고 관세납부 즉시 그 결과를 “이용기관”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u> ③ <u>“이용기관”이 관세를 신청하여 “은행”이 처리한 관세 납부에 대하여 납부 금액의 과소, 과다, 착오납부로 인한 관세납부 불능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기관”과 세관간에 직접 수기로 조정 처리합니다.</u> ④ <u>“은행”은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장, 중서, 인출청구서, 수표 등에 의한 별도의 예금청구 절차 없이 “이용기관”이 요청한 관세납부 의뢰금액을 지급계좌로부터 인출하며, 지급계좌에 입금된 미추심 자기앞수표 금액은 지급가능 잔액에 포함합니다.</u> ⑤ <u>제4항에 의하여 출금된 미추심 자기앞수표가 부도반환 되었을 때에 “은행”은 동 부도대전을 “이용기관”의 지급계좌에서 인출하여 정리하며, 잔액부족 시 은행이 이 사실을 통보하면 “이용기관”은 부도 반환일의 “은행”의 영업종료 시간까지 부족금액을 지급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u></p>	<p>구 외환은행 서비스 추가 적용에 따른 조항 신설</p>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공통사항</p> <p>제 31 조 ~ 제 37 조 (내용생략)</p> <p>제 38 조(준용사항) ① 펌뱅킹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각의 대상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은행”의 관련내규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u>하나은행</u>)을 준용한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구 <u>하나은행</u>)" 등을 준용한다.</p> <p>제 39 조 ~ 제 43 조 (내용생략)</p> <p>제 41 조 (종료 및 연장) ①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 42 조(관할법원) ~ 제 43 조(특약사항) (내용생략)</p> <p><u>주식회사 하나은행</u> <u>e-금융사업부장</u> (인)</p>	<p>⑥“이용기관”이 제5항의 부도반환일 영업시간까지 부도금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은행”이 “이용기관”을 대리하여 “이용기관”의 타 예금계좌에서 동 금액을 인출하여 부도로 인한 부족액에 충당하기로 합니다.</p> <p>제 35조 (변경, 수정, 취소) “이용기관”은 “은행”이 제 34조의 절차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한 이후에는 관세납부를 변경,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0 장 공통사항</p> <p>제 36 조 ~ 제 42 조 (좌 등)</p> <p>제 43 조(준용사항) ① 펌뱅킹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각의 대상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은행”의 관련내규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등을 준용합니다.</p> <p>제 44 조 ~ 제 45 조 (내용생략)</p> <p>제 46 조 (종료 및 연장) ①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u>해지요청일</u>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p> <p>제 47 조(관할법원) ~ 제 48 조(특약사항) (내용생략)</p> <p><u>주식회사 하나은행</u> <u>미래금융사업부장</u> (인)</p>	<p>구 외환은행 서비스 추가 적용에 따른 조항 신설</p> <p>조항 철폐</p> <p>조항 철폐 및 문구 삭제</p> <p>조항 철폐</p> <p>조항 철폐 용어 변경</p> <p>조항 철폐</p> <p>변경된 부서명 반영</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 적용